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638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923,980원, 18,926,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9

가. 원고는 2014. 10. 7. 건축허가를 받아 [redacted]시 [redacted]구 B 외 2필지 지상에 12세대의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 C건물 D동)을 신축한 후 2015. 6. 18.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2014. 10. 8. 건축허가를 받아 [redacted]시 [redacted]구 E 외 1필지 지상에 12세대의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 C건물 F동)을 신축한 후 2015. 6. 22.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4. 위 각 공동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8,923,080원(C건물 F동에 관하여), 18,926,350원(C건물 D동에 관하여)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20. 6. 19. 피고에게 위 각 공동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위 18,923,080원과 18,926,35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3.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이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1.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2020. 7. 1.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2021. 4.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923,980원과 18,926,3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9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원고 스스로 한 2015. 6. 24.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두고 '피고가 2015. 6. 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스스로 한 신고·납부행위로서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피고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애초 소장에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의 2020. 7. 1.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21. 3. 16. '원고 스스로 한 2015. 6. 24.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설령 원고가 재차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의 2020. 7. 1.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9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